

의안번호	제 158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4월 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	-----

제출연월일 : 2019년 4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여객 수요에 대응

2. 주요내용

-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안 제3조)
 - 운행노선, 운행대수,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사업자 공개 선정
-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및 선정(안 제4조 ~ 제5조)
 - 차량대수 5대 이상, 예외적 1대 이상 가능, 사업자 공개 선정
- 운임의 신고 및 차량(안 제6조 ~ 제7조)
 - 운임·요금 신고, 16인 이상 승합자동차(마을버스 9인 ~ 15인 승합차 가능)
- 협의(안 제8조)
 - 한정면허, 마을버스 노선이 2개 이상 시·군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협의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이하 “한정면허”라고 한다)를 말한다.
2.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한정면허에 대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해당노선의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 수준
4. 면허기간
5.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면허대상 운행노선에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유차고, 운송부대시설,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사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경우에 면허할 수 있다.

제4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①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운행구간,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 운행노선에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적합한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할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운임의 신고)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 ①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

업은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승차감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구조변경 절차를 따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협약) 도지사는 한정면허의 노선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노선의 연장 또는 분할, 정류소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23조 관련)

1. 등록기준 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시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비고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섬과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 (최 저)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1) 대 형	36㎡ ~ 40㎡
2) 중 형	23㎡ ~ 26㎡

3. 운송 부대시설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